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소 관 기 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 치 기 관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등에 따라 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해 납부를 독촉하였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된 지방세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¹¹⁷⁾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¹¹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¹¹⁹⁾ 또는 과점주주¹²⁰⁾(이하 “출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

118)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1종 세목

119)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12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자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¹²¹⁾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¹²²⁾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서구와 사하구는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¹²³⁾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강서구와 사하구의 체납된 지방세 채권 관리 실태를 검토한 결과, 강서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T)이 지방

12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12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고 판시

12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에 따르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이행한 결과 부족한 금액에 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

소득세 등 6건의 지방세 계 4,729,990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에 상당할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AT(지분율 70%)과 BJ(지분율 30%)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위 사람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1] “강서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명세”와 같이 518건 계 974,427,530원¹²⁴⁾의 법인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888,268,190원만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출자자 69명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사하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U)가 지방소득세 등 4건의 지방세 계 5,473,710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에 상당할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AU와 AV(지분율 각 50%)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위 사람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2] “사하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명세”와 같이 316건 계 390,594,730원¹²⁵⁾의 법인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381,492,370원만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출자자 57명(과점주주인 법인 포함)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법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출자자 126명에게 계 1,269,760,560원의 징수금이 납부고지되지 않고 있다.

124) 강서구는 21개 법인의 총 249건 계 226,983,410원의 체납세목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를 누락한 상태로 법인 무재산 등을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결손 처분을 취소함

125) 사하구는 25개 법인의 총 235건 계 275,010,930원의 체납세목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를 누락한 상태로 법인 무재산 등을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결손 처분 취소함

관계기관 의견

강서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확인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하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확인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고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①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 ●●● 등 65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69명에게 계 888,268,190원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①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 ■■■ 등 34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57명(과점주주인 법인 포함)에게 계 381,492,370원의 체납 지방세를 납부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강서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명세

(단위: 건, 원, %)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1	주식회사○○ (-)	결손	-	-	AT	70	-
					- (-)	30	-
		체납	6	4,729,990	AT (-)	70	3,310,920
					- (-)	30	1,419,070
2	주식회사- (-)	결손	-	-	- (-)	60	-
		체납	8	2,899,520	- (-)	60	1,739,640
3	주식회사- (-)	결손	-	-	- (-)	69.01	-
		체납	2	55,376,690	- (-)	69.01	38,215,380
4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7	5,260,180	- (-)	100	5,260,180
5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5	7,183,890	- (-)	100	7,183,890
6	주식회사- (-)	결손	-	-	- (-)	50	-
					- (-)	50	-
		체납	7	13,345,790	- (-)	50	6,672,820
					- (-)	50	6,672,970
7	주식회사- (-)	결손	-	-	- (-)	60	-
					- (-)	40	-
		체납	6	9,928,310	- (-)	60	5,956,920
					- (-)	40	3,971,39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8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1	16,858,000	- (-)	100	16,858,000
9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4	2,363,890	- (-)	100	2,363,890
10	-주식회사 (-)	결손	12	5,787,660	- (-)	100	5,787,660
		체납	-	-	- (-)	100	-
11	- (-)	결손	-	-	- (-)	70	-
		체납	6	2,635,190	- (-)	70	1,844,550
12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	2,179,090	- (-)	100	2,179,090
13	- (-)	결손	4	7,694,290	- (-)	100	7,694,290
		체납	-	-	- (-)	100	-
14	-주식회사 (-)	결손	-	-	- (-)	55.31	-
		체납	5	7,035,120	- (-)	55.31	3,891,000
15	- (-)	결손	-	-	- (-)	100	-
		체납	8	4,636,980	- (-)	100	4,636,980
16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6	8,067,650	- (-)	100	8,067,650
17	-주식회사 (-)	결손	34	12,605,300	- (-)	55	6,932,410
		체납	-	-	- (-)	55	-
18	-주식회사 (-)	결손	-	-	- (-)	60	-
		체납	8	4,124,330	- (-)	60	2,474,48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19	-주식회사 (-)	결손	8	24,089,620	- (-)	100	24,089,620
		체납	-	-	- (-)	100	-
20	-주식회사 (-)	결손	18	18,958,030	- (-)	100	18,958,030
		체납	-	-	- (-)	100	-
21	-주식회사 (-)	결손	1	7,485,630	- (-)	100	7,485,630
		체납	-	-	- (-)	100	-
22	-주식회사 (-)	결손	18	17,025,190	- (-)	81.25	13,832,600
		체납	-	-	- (-)	81.25	-
23	-주식회사 (-)	결손	-	-	- (-)	63	-
		체납	3	2,184,950	- (-)	63	1,376,470
24	-주식회사 (-)	결손	1	2,828,550	- (-)	100	2,828,550
		체납	-	-	- (-)	100	-
25	주식회사- (-)	결손	2	4,917,230	- (-)	100	4,917,230
		체납	-	-	- (-)	100	-
26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4	3,419,890	- (-)	100	3,419,890
27	주식회사- (-)	결손	-	-	- (-)	50	-
					- (-)	50	-
		체납	2	4,610,790	- (-)	50	2,305,410
					- (-)	50	2,305,380
28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4	4,180,280	- (-)	100	4,180,28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29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3	14,392,080	- (-)	100	14,392,080
30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8	6,724,450	- (-)	100	6,724,450
31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8	9,047,260	- (-)	100	9,047,260
32	주식회사- (-)	결손	-	-	- (-)	90	-
		체납	6	20,236,040	- (-)	90	18,212,330
33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	9,017,760	- (-)	100	9,017,760
34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3	7,536,210	- (-)	100	7,536,210
35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2	10,885,150	- (-)	100	10,885,150
36	주식회사- (-)	결손	7	7,623,510	- (-)	91	6,937,260
		체납	-	-	- (-)	91	-
37	주식회사- (-)	결손	-	-	- (-)	82.86	-
		체납	5	3,260,570	- (-)	82.86	2,701,630
38	주식회사- (-)	결손	-	-	- (-)	58	-
		체납	5	7,105,910	- (-)	58	4,121,350
39	주식회사- (-)	결손	6	12,962,840	- (-)	79.94	10,362,360
		체납	-	-	- (-)	79.94	-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40	주식회사- (-)	결손	16	10,741,340	- (-)	100	10,741,340
		체납	-	-	- (-)	100	-
41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	4,258,000	- (-)	100	4,258,000
42	주식회사- (-)	결손	-	-	- (-)	40	-
					- (-)	30	-
		체납	6	3,201,520	- (-)	40	1,280,540
					- (-)	30	960,390
43	주식회사- (-)	결손	14	4,113,960	- (-)	75	3,085,300
		체납	-	-	- (-)	75	-
44	주식회사- (-)	결손	-	-	- (-)	90.1	-
		체납	2	3,458,280	- (-)	90.1	3,115,880
45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1	16,352,610	- (-)	100	16,352,610
46	주식회사- (-)	결손	-	-	- (-)	70	-
		체납	8	3,360,650	- (-)	70	2,352,340
47	주식회사- (-)	결손	11	16,163,460	- (-)	75	12,122,460
		체납	-	-	- (-)	75	-
48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5	2,206,670	- (-)	100	2,206,670
49	주식회사- (-)	결손	16	11,910,600	- (-)	100	11,910,600
		체납	-	-	- (-)	100	-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을	미고지액
50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	2,065,420	- (-)	100	2,065,420
51	주식회사- (-)	결손	22	9,170,780	- (-)	55	5,043,580
		체납	-	-	- (-)	55	-
52	주식회사- (-)	결손	8	4,808,660	- (-)	100	4,808,660
		체납	-	-	- (-)	100	-
53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5	5,669,010	- (-)	100	5,669,010
54	주식회사- (-)	결손	9	19,750,240	- (-)	100	19,750,240
		체납	-	-	- (-)	100	-
55	주식회사- (-)	결손	16	6,759,630	- (-)	100	6,759,630
		체납	-	-	- (-)	100	-
56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6	4,660,480	- (-)	100	4,660,480
57	주식회사- (-)	결손	19	9,881,120	- (-)	100	9,881,120
		체납	-	-	- (-)	100	-
58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	3,570,910	- (-)	100	3,570,910
59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	2,257,130	- (-)	100	2,257,13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체납/결손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60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10	2,787,680	- (-)	100	2,787,680
61	- (-)	결손	-	-	- (-)	100	-
		체납	3	3,188,830	- (-)	100	3,188,830
62	-주식회사 (-)	결손	7	11,705,770	- (-)	90	10,535,080
		체납	-	-	- (-)	90	-
63	-주식회사 (-)	결손	-	-	- (-)	90	-
		체납	1	6,445,460	- (-)	90	5,800,880
64	- (-)	결손	-	-	- (-)	93	-
		체납	5	425,753,840	- (-)	93	395,950,870
65	-주식회사 (-)	결손	-	-	- (-)	93.33	-
		체납	5	8,981,670	- (-)	93.33	8,382,430
계			518	974,427,530	69명		888,268,190

주: 1. 납세자번호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말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목들은 2018년 5월 현재 결손처분 취소된 상태

3. 체납/결손액은 2018. 5. 18. 기준 가산세 포함 금액

자료: 강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사하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명세

(단위: 건, 원, %)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1	주식회사 ■■■ (-)	결손	-	-	AU (-)	50	-
					AV (-)	50	-
		체납	4	5,473,710	AU (-)	50	2,736,820
					AV (-)	50	2,736,890
2	주식회사- (-)	결손	14	2,920,380	- (-)	51	1,489,200
		체납	1	27,880	- (-)	51	14,210
3	- (-)	결손	3	6,518,630	- (-)	33.64	2,192,770
					- (-)	15	977,730
					- (-)	1.36	88,550
					- (-)	3.18	207,220
					- (-)	1.36	88,550
					- (-)	5.91	385,190
					- (-)	39.55	2,578,620
		체납	-	-	- (-)	33.64	-
					- (-)	15	-
					- (-)	1.36	-
					- (-)	3.18	-
					- (-)	1.36	-
					- (-)	5.91	-
					- (-)	39.55	-
4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3	4,218,270	- (-)	100	4,218,27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5	- (-)	결손	6	1,278,700	- (-)	100	1,278,700
		체납	6	4,099,760	- (-)	100	4,099,760
6	- (-)	결손	9	13,428,360	- (-)	100	13,428,360
		체납	1	59,450	- (-)	100	59,450
7	- (-)	결손	-	-	- (-)	70	-
					- (-)	30	-
		체납	6	7,238,720	- (-)	70	5,066,990
					- (-)	30	2,171,730
8	-주식회사 (-)	결손	33	8,946,910	- (-)	100	8,946,910
		체납	11	642,900	- (-)	100	642,900
9	-주식회사 (-)	결손	1	261,990	- (-)	90	235,780
		체납	1	1,494,490	- (-)	90	1,345,030
10	- (-)	결손	1	2,216,830	- (-)	49.67	1,101,080
					- (-)	16.67	369,530
		체납	-	-	- (-)	49.67	-
					- (-)	16.67	-
11	- (-)	결손	4	3,263,560	- (-)	100	3,263,560
		체납	-	-	- (-)	100	-
12	-주식회사 (-)	결손	2	1,485,030	- (-)	95	1,410,740
					- (-)	2.5	37,100
		체납	-	-	- (-)	95	-
					- (-)	2.5	-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을	미고지액
13	-	결손	-	-	-	100	-
		체납	3	4,512,340	-	100	4,512,340
14	-	결손	-	-	-	84.62	-
					-	15.38	-
		체납	1	4,914,240	-	84.62	4,158,400
					-	15.38	755,840
15	-	결손	14	16,629,300	-	83	13,802,020
		체납	-	-	-	83	-
16	주식회사- (-)	결손	9	14,048,200	-	100	14,048,200
		체납	-	-	-	100	-
17	주식회사- (-)	결손	11	3,388,460	-	100	3,388,460
		체납	2	264,420	-	100	264,420
18	주식회사- (-)	결손	6	11,796,350	-	100	11,796,350
		체납	2	347,760	-	100	347,760
19	주식회사- (-)	결손	7	78,565,290	-	46.63	36,634,680
					-	12.19	9,576,870
					-	8.54	6,709,230
					-	8.54	6,709,230
					-	24.1	18,935,280
		체납	14	69,444,570	-	46.63	32,381,780
					-	12.19	8,465,010
					-	8.54	5,930,320
					-	8.54	5,930,320
					-	24.1	16,737,14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20	주식회사- (-)	결손	1	4,791,110	- (-)	99.5	4,767,130
		체납	-	-	- (-)	99.5	-
21	주식회사- (-)	결손	11	7,933,670	- (-)	100	7,933,670
		체납	-	-	- (-)	100	-
22	주식회사- (-)	결손	4	1,598,120	- (-)	100	1,598,120
		체납	-	-	- (-)	100	-
23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2	2,743,300	- (-)	100	2,743,300
24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6	2,055,390	- (-)	100	2,055,390
25	주식회사- (-)	결손	9	18,896,080	- (-)	10	1,889,490
					- (-)	10	1,889,490
					- (-)	80	15,117,100
		체납	-	-	- (-)	10	-
					- (-)	10	-
					- (-)	80	-
26	주식회사- (-)	결손	24	21,797,870	- (-)	40	8,718,910
					- (-)	60	13,078,960
		체납	2	1,606,970	- (-)	40	642,760
					- (-)	60	964,210
27	주식회사- (-)	결손	15	8,104,310	- (-)	90	7,293,660
					- (-)	10	810,650
		체납	1	4,260	- (-)	90	3,810
					- (-)	10	45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28	주식회사- (-)	결손	24	18,151,130	- (-)	92	16,698,630
		체납	-	-	- (-)	92	-
29	주식회사- (-)	결손	3	2,386,250	- (-)	70	1,670,320
					- (-)	30	715,930
		체납	-	-	- (-)	70	-
					- (-)	30	-
30	주식회사- (-)	결손	15	11,971,480	- (-)	20	2,394,140
					- (-)	30	3,591,220
					- (-)	50	5,986,120
		체납	-	-	- (-)	20	-
					- (-)	30	-
					- (-)	50	-
31	주식회사- (-)	결손	3	4,747,790	주식회사- (-)	64.15	3,045,660
		체납	4	92,700	주식회사- (-)	64.15	59,420
32	주식회사- (-)	결손	6	9,885,130	- (-)	100	9,885,130
		체납	-	-	- (-)	100	-
33	주식회사- (-)	결손	-	-	- (-)	100	-
		체납	7	4,145,420	- (-)	100	4,145,420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번	법인명 [납세자번호 ¹⁾]	구분 ²⁾	건수	체납/결손액 ³⁾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¹⁾]	지분율	미고지액
34	주식회사- (-)	결손	-		- (-)	40	-
					- (-)	30	-
		체납	4	2,197,250	- (-)	40	878,870
					- (-)	30	659,120
계		-	316	390,594,730	57명		381,492,370

주: 1. 납세자번호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말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목들은 2018년 5월 현재 결손처분 취소된 상태

3. 체납/결손액은 2018. 5. 18. 기준 가산세 포함 금액

자료: 사하구 제출자료 재구성